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66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김영식

권명호 · 정운천 · 태영호

김성원 · 이종성 · 박성민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함.

또한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도지사"를 "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	제4조(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
의 수립ㆍ시행) ① (생 략)	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
	<u></u> 이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	②
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	
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
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	
특별시장·광역시장· <u>도지사</u> ·	<u>특별자치시</u>
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	<u>장•도지사</u>
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	
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